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 인	2 인
재적임원	9 인	1 인
참석임원	5 인	0

## 학교법인 옥산학원 2019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7월 5일(금) 11:00 ( 회의소집 통보일 : 2019. 6. 26 )

2. 장 소 : 익산시 마동 법인사무실 (전화 833-1005)

###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인원
  - 이사(5인) : 남궁준, 신종술, 조점수, 정옥자, 권의달
  - 불참인원
    - 이사(4인) : 강권표, 정원석, 이득세, 김대종
    - 감사(1인) : 이훈행

### 4. 안 건

제1호의 안 : 수익용재산 처분에 관한 건.

제2호의 안 : 교장자격인정 대상자 추천

5. 성원보고 : 간사로부터 재적이사 9인중 5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성원됨을 보고받다.

6. 개 회 : 2019학년도 제2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7. 전 회의록 낭독: 의장이 간사로 하여금 전 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하다. 낭독 후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묻자 “이의없다” 하여 무수정 통과하다.

### 8. 의결사항

- 1) 처분대상(미등기재산포함)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결정하고, 처분시 발생하는 법인세(양도 소득세)등 비용을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익용재산으로 관리토록 결정.
- 2) 2019년 하반기 교장 자격인정대상자를 유상수로 결정.

## 9. 심의안건

의장 : 안건이 시급하여 자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수익용 재산 처분에 관한 안건과 2019학년도 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된 교장의 연수가 2학기중에 종료됨에 따라 자격취득시까지 교장 인정 대상자로 추천을 요구해 옴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1호의 안): 수익용재산 처분에 관한 건

의장 : 수익용재산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 전주건설사업단으로 부터 고속도로건설에 편입되는 법인소유인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89-3번지외 토지 3건과 재배사 건물 외 블임 목록분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이 있어, 제2회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법인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게 계상된거 아닌지 재검토하고 결정하자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계산했던 금액인 총보상금 944,133,49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186,861,830원 농어촌특별세 4,152,480원, 지방소득세 18,686,183원등, 총 209,700,493원을 계산한 것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국세청프로그램에 대입하여 계산한 정당 납부금액이라는 결과입니다.

세율 단계에서 2건으로 분할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같은 사업으로 매각하는 자체가 세금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여 불성실신고로 과태료까지 추징될 수도 있다는 권고로 금번 일괄 처리 하도록 안건을 상정 했습니다.

또한 처분 목록에 기재된 건물인 재배사는 1985년에 준공되어 사용했으며, 관리사 78m<sup>2</sup>, 화장실 18m<sup>2</sup>는 재배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1987년 증축하면서 법인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와 맞물려 증축되어 김제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미등기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이번 처분재산목록에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처분대금에 등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

의장 : 간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2회 이사회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거 아니냐는 의견으로 보류했지만 세금은 법으로 되어있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종술이사: 원하지 않은 처분이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것이고 세금 또한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JW

PV<sup>10</sup>

3V \ 8.5 | 2.1

원안대로 처분하자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의장 : 신종술이사님의 처분결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자이사 : 제2회이사회 후 세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신종술이사님의 처분결정안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의장 : 신종술이사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정옥자이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점수,권의달이사 : 없습니다.

의장 : 그러면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의 찬성으로, 붙임 목록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처분하도록 하며, 처분금액 944,133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법인세(양도소득세) 및 기타공과금 209,700천원은 별도로 예치하여 법인 세신고시 납부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제2호의 안): 교장자격인정 대상자 추천

의장 : 교장자격인정 대상자 추천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다.

간사 : 이번 안건은 만경여고의 현 교장 박기택의 2019년 8월말 정년퇴직으로, 2018학년도 제4회 이사회에서 교장연수대상자로 추천하여 교장연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유상수 선생의 교장연수가 임용예정일인 2019년 9월1일 이후 교장자격연수가 종료되고 자격이 발급될 예정이어서 자격증취득시까지의 교장자격 인정대상자 추천을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장 : 간사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8학년도 제4회 이사회에서 오랜 교육경력 및 많은 연수등을 받아 학식, 덕망 모두 높다고 판단하여 교장연수 대상자로 추천했던 선생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자격취득시까지 만경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는 자격인정으로 추천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달이사 : 교장자격연수 추천을 이미 했으며, 1학기 중에도 부분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 동의합니다.

의장 : 권의달이사님으로부터 유상수 선생님의 자격인정대상자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점수이사 : 권의달이사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다.

의장 : 권의달이사님의 동의안대하여 조점수이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술이사, 정옥자이사 : 이의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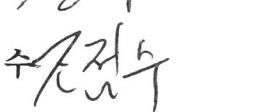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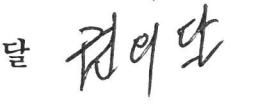
의장 : 모든 이사님들의 찬성으로 만경여자고등학교 유상수를 2019년 9월1일부터  
자격취득시까지의 교장자격인정대상자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10. 폐회선언

의장 : 이상으로서 학교법인 옥산학원 2019학년도 제3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님께서는 회의록에  
자필 서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2019년 7월 5일 11:50)

2019년 7월 5일

학교법인 옥산학원 이사장 남궁준   
이사신종술   
이사조점수   
이사권의달   
이사정옥자 